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9. 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8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138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8. 9. 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 종 철

가. 개정이유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 개정 내용

1)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국내여비 가운데 정산제를 실시하던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 정산제를 폐지하고 정액제로 전환 운영함(안 제4조 관련, 별표)

(단위 : 원)

구 분	운 임				숙박비 (1야당)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구청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참고 1.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규정에 의함.

2.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함.

3. 현행 운임은 철도·버스·항공 등 실비, 숙박비는 1호는 실비 2호는 4만원 한도에서 사후 정산

2) 여비의 정액지급과 별도로 구청장의 국내여비 가운데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안 제4조 관련, 별표)

3) 구청장 국외여비 지급의 등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의 “제2호”에서 “제1호 라목”을 적용 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가 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도 여비 정산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공무원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정산제를 실시하던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서는 정산제를 폐지하고 정액제로 전환하되 구청장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과 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 표준안이 2008년 4월 서울시장으로부터 각각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